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8. 20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8.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99.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전영표)

가. 제안이유

- 굴착공사 시행자는 공사시점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동 대책에 대하여 매설물관리자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 동 안전대책 수립단계에서 이미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 조정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6호 중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서 현행대로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안전관리상 필요한 규정인데 삭제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굴착을 할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을 하는데 복구 공사시 재차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행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관련 제208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0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굴착공사 시행자는 공사시점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동 대책에 대하여 매설물관리자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 동 안전대책 수립 단계에서 이미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제출된 안전 대책 등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 조정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함

 주요골자

-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3항 "별표3"의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안 제3조)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5(생략)</p> <p>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u>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u> 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7~8(생략)</p>	<p>(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5(현행과 같음)</p> <p>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7~8(현행과 같음)</p>